

의안처리상황표

의안번호	3
건명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발의자	성북구청장
발의연월일	2026년 8월 12일
심사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결과	2026년 9월 7일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
이송연월일	2026년 9월 8일
공포년월일 및법률번호	년 월 일 조례 제 호

<요지>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이 2026.12.31.종료됨에 따라,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3
----------	---

제출년월일 : 2026년 8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세대통합형 어울림 공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아름다운 정릉1동사람들 협동조합』과의 위탁계약이 2026.12.31.종료됨에 따라,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2(승인 및 동의) 제1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시설명	위탁운영체	시설현황				
		센터장	소재지	시설규모	개소일	위탁기간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아름다운정릉1동 사람들협동조합 (조합장:이건평)	박경선	성북구 정릉로38가길6 (정릉1동)	대지면적:271m ² 규모: 지상2,3층 (연면적:233.53m ²) * 지상1층 경로당은 위탁에서 제외	2014.1.1	‘23.1.1.~ ’26.12.31.

나. 위탁기간 : 2027. 1. 1. ~ 2029.12.31.(3년)

다. 위탁방법 : 공개모집,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의결

라. 위탁사무의 범위 : 센터 관리·운영 및 사무 전반

- 정릉1동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4조의2(승인 및 동의)

-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
- 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와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5조 (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제7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 2025.3.13.)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3.28.]

제10조(계약체결 등)

- ① 구청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위탁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개정 2020.12.31.)
6. 계약내용 위반시 조치사항 (개정 2016.12.29, 2020.12.31.)
7. 예산지원 내용 (개정 2020.12.31.)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0.12.31.)

-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구청장은 재계약을 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8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2.29.)

-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9조에서 이동, 2013.3.28]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 예정(참고: 2026년 민간위탁금 79,537천원)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